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257호 2011. 12. 30(금)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의령군 규칙 제1002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의령군 규칙 제1003호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의령군 규칙 제1004호 의령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11-69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 의령군 고시 제2011-70호 의령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 10
- 의령군 고시 제2011-71호 제2차 의령군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 ----- 11
- 의령군 고시 제2011-72호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 12
- 의령군 고시 제2011-73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 14
- 의령군 고시 제2011-74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 15
- 의령군 고시 제2011-75호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설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6
- 의령군 고시 제2011-76호 의령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 17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11-755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9
- 의령군 공고 제2011-756호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 공고 ----- 20
- 의령군 공고 제2011-763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27

○ 의령군 공고 제2011-765호 2012년도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28
○ 의령군 공고 제2011-766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검사·점검지연·등록) 공시송달 -----	29
○ 의령군 공고 제2011-770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	31
○ 의령군 공고 제2011-771호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상반기)융자지원 계획 공고 -----	32
○ 의령군 공고 제2011-773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34
○ 의령군 공고 제2011-778호 공시송달공고 -----	35
○ 의령군 공고 제2011-78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36
○ 의령군 공고 제2011-783호 공시송달공고 -----	37
○ 의령군 공고 제2011-786호 남산동 도시계획도로(의령도서관~창홍빌라) 개설 사업 공고 -----	39

(다음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의령군수

2011년 12월 28일

의령군 규칙 제1002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 중 제38호부터 제40호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2. 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 총괄관리
23. 각종 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처리 등
24. 고용촉진(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1(주민생활지원실)(생 략) 1. ~ 37.(생 략) <u>38. 공공근로의 기획·조정·평가 등 총괄관리</u> <u>39. 각종 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처리 등</u> <u>40. 고용촉진(직업)훈련 및 취업알선</u>	제4조의1(주민생활지원실)(현행과 같음) 1. ~ 37.(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8조(경제과)(생 략) 1. ~ 21.(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경제과)(현행과 같음) 1. ~ 21.(현행과 같음) <u>22.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 총괄 관리</u> <u>23.각종 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처리 등</u> <u>24.고용촉진(직업)훈련 및 취업알선</u>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의령군수

2011년 12월 28일

의령군 규칙 제1003호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의령군수

2011년 12월 28일

의령군 규칙 제1004호

의령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령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종, 차형, 배정 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이 규칙에 의한 차량의 <u>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u> <u>운행기준연한은</u> 별표1과 같다.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등) ----- <u>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u> <u>기준은</u> 별표1과 같다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3,000cc미만 - 군수 ○ 배기량 3,000cc미만 - 군의회의장 ○ 배기량 2,500cc미만 -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의 전용)	대형승용차	- 차량 수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중형승용차	- 차량 수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 1,5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관리 · 운행기준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차량 수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장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장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소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관리 · 운행기준
특수용	청소차	- 차량 수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 타		

비고 : 대형, 중형, 소형,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의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6.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77 등 2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실(☎055-570-2183,2187)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1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의령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009.01.29)호로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 : 화정골프장)로 결정된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산28-2번지 일원의 화정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령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1. 12. 28.

의 령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산2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 : 화정골프장)
- 명 칭 : 화정 대중 골프장(18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체육시설 A=882,600m²
- 규 모 : 일반대중 18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하성원개발(주) 김정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807-6번지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시행자 지정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2차 의령군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의령군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의령군수

1. 제 목 : 제2차 의령군 지방대중교통계획
2. 목 적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함
3.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 (5년간)
4.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나. 장래 교통여건 전망
 - 다. 대중교통정책 목표설정 및 개선방안
 - 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 세부내용은 의령군청 경제과(☎055-570-2832)에 비치
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경상남도 의령군수

I.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신축건물기준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물의 구조별 · 용도별 · 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④ 건물의 규모 ·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⑤ 중·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의령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 ⑥ 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의령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천점용 허가고시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6길 22 김선영 외 5인이 신청한 화정면 상일리 803-6번지 외 5필지의 하천점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허가한 사항을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의령군수

□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위치	허가면적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허가자	
					주소	성명
남강	화정면 상일리 803-6	1,312	경작	2012.01.01.~ 2012.12.31.	화정면 화정로6길 22	김선영
남강	화정면 상일리 804-3	889	경작	2012.01.01.~ 2012.12.31.	의령읍 서동리 491-3	김선화
남강	화정면 상일리 803-6	1,312	경작	2012.01.01.~ 2012.12.31.	화정면 상일리 329	김화중
남강	화정면 상이리 8-7	3,226	수상장비 진입 로 및 주차장	2012.01.01.~ 2012.12.31.	화정면 화양리 597-21	주식회사 남강레저 박기곤
남강	화정면 상이리 5-6	2,155	유선장	2012.01.01.~ 2012.12.31.	의령읍 중리 97-3	경남청소년교육 개발원 강수명
남강	화정면 상이리 8-8	2,347	유선장	2012.01.01.~ 2012.12.31.	의령읍 중리 97-3	경남청소년교육 개발원 강수명

하천점용 허가고시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5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이 신청한 화정면 상정리 1287-14번지 하천점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허가한 사항을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의령군수

□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위치	허가면적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허가자	
					주소	성명
상정천	화정면 상정리 1287-14	3	토지의 점용	2012.01.01.~ 2014.12.31.	의령읍 의병로 14길 5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설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의령군 고시 제2009-44호(2009.08.21)로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설주차장)로 결정된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1254번지 일원의 부림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 12. 30.

의 령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12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설주차장)
 - 명 칭 : 부림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A = 7,682m²
 - 사업의 규모 : 소형주차장 177대, 장애인주차 7대, 대형주차 8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 성 명 : 의령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준공 예정일 : **당초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06월 30일(중 1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없음**
7. 관계도서 : **변경없음**

의령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1. 의령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일원의 『부림 도시계획도로(우회도로)개설공사 등 5건』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령군청 건설도시과(☎055-570-2730)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 12. 30.

의령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의령읍 서동리, 동동리 일원

2. 사업의 현황

구분	종류	명칭	사업면적 또는 규모	착수일	준공일	
					당초	변경
1	군계획시설 (도로:대로 3-1)	부림(우회도로)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L=366m B=20.0m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2011.12.31	2012.12.31
2	군계획시설 (도로:소로 2-22)	부림(동동~중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10m B=8.0m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2011.12.31	2012.12.31
3	군계획시설 (도로:소로 2-38)	서동도시계획도로 (재래시장~의령병원) 개설사업	L=215m B=8.0m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2011.12.31	2012.12.31
4	군계획시설 (도로:소로 2-4)	서동(석호빌라~스카이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20m B=8.0m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2011.12.31	2012.12.31
5	군계획시설 (도로:소로2-69)	서동 도시계획도로 (삼영파크~우수골) 개설사업	L=326m B=8.0m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2011.12.31	2012.12.31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번지
 - 나. 성명 : 의령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임참조
5. 관계도서 : 실음생략(의령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의령군수

- 제 목 :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 2011. 12. 20. ~ 2012. 1. 3.(15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불임
-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의령군 환경수도과 ☎(055)570-2555
-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공람 · 공고**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6-2번지 일원에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결정) 결정(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사전환경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0일

의령군수

1. 명칭 :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의령군수 (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36-805/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의령군청 건설도시과)이나 전화(055-570-2730), FAX(055-570-2049), E-mail : samsso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5. 입안내용

1)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2,939,975	-	482,939,975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15,591,845	-	15,591,845	3.23	
	소 계	1,881,284	-	1,881,284	0.39	
	제1종전용주거지역	12,690	-	12,690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55,371	-	1,655,371	0.3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023	-	203,023	0.04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도 시 지 역	준 주 거 지 역	10,200	-	10,200	0.01	
	소 계	223,555	-	223,555	0.0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23,555	-	223,555	0.05	
	근린상업지역	-	-	-	-	
상 업 지 역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988,472	-	988,472	0.2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936,472	-	936,472	0.19	
공 업 지 역	준공업지역	52,000	-	52,000	0.01	
녹 지 지 역	소 계	12,498,534	-	12,498,534	2.59	
	보전녹지지역	142,458	-	142,458	0.03	
	생산녹지지역	5,456,830	-	5,456,830	1.13	
	자연녹지지역	6,899,246	-	6,899,246	1.43	
관 리 지 역	소 계	145,845,704	증) 19,470	145,865,174	30.20	
	관리지역	9,198,577	-	9,198,577	1.90	
	계획관리지역	51,146,556	-	51,146,556	10.59	
	생산관리지역	33,928,246	-	33,928,246	7.03	
	보전관리지역	51,572,325	증) 19,470	51,591,795	10.68	
농 림 지 역		321,502,426	감) 19,470	321,482,956	66.57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주) 기정 : 의령군 고시 제2011-57호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유곡면 세간리 806-2 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 지 역	19,47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재우 생가 주변을 정비하여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생가주변을 조성 하여 살아있는 관광, 녹색관광, 환경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함 ◦ 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조서

(1)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곽재우	문화 공원	유곡면 세간리 806-2번지 일원	-	증) 19,470	19,470	-	

(2) 군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곽재우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재우 생가 주변에 편의, 운동,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생가주변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관광, 녹색관광, 환경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함.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

(1) 공원면적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법적 기준
신설	계	19,470	100.0	
신설	시설면적	12,132	62.3	제한 없음
신설	건축면적	79	-	
신설	녹지면적	7,338	37.7	

(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세부시설명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9,470	79	79	100.0	
도로및광장	신설	5,568	-	-	28.6	
조경시설	신설	200	-	-	1.0	
휴양시설	신설	61	-	-	0.3	
운동시설	신설	326	-	-	1.7	
교양시설	신설	3,858	-	-	19.8	
편익시설	신설	1,832	-	-	9.4	
관리시설	신설	287	79	79	1.5	
녹지	신설	7,338	-	-	37.7	

(3) 시설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구조	층수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19,470	79	79			
	신설	시설소계			12,132	79	79		
도로 및 광장	신설	소 계			5,568				
	신설	도 로			1,212				
	신설	광 장			4,356				
	신설	0-1	녀 른 마 당	세간리 806-2 일원	3,003				
	신설	0-2	현 고 수 광 장	세간리 810일원	1,353				
조경 시설	신설	소 계			200				
	신설	1-1	인 공 폭 포	세간리 811-1 일원	200				
휴양 시설	신설	소 계			61				
	신설	2-1	전 망 대 크	세간리 62 일원	61				
운동 시설	신설	소 계			326				
	신설	3-1	체 력 단 련 장	세간리 809-4 일원	326				
교양 시설	신설	소 계			3,858				
	신설	4-1	야 외 공 연 장	세간리 811-2 일원	707				
	신설	4-2	전 통 놀 이 마당	세간리 809-6 일원	1,653				
	신설	4-3	전 투 체 험 장	세간리 806-1 일원	749				
	신설	4-4	전통놀이체험장	세간리 809-4 일원	749				
편의 시설	신설	소 계			1,832				
	신설	5-1	주 차 장	세간리 806-1 일원	1,832				
관리 시설	신설	소 계			287	79	79		
	신설	6-1	관 리 소	세간리 809-7 일원	287	79	79	1층	
녹지	신설	소 계			7,338				
	신설	녹지			7,338				

(4)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총 계			1.5~3	616	1,212				
신설	산책로	-	1	3	108	324	시설간연결로	산책로5	산책로4	
신설	산책로	-	2	3	42	126	시설간연결로	산책로1	현고수광장	
신설	산책로	-	3	3	42	126	시설간연결로	산책로1	현고수광장	
신설	산책로	-	4	1.5	230	345	시설간연결로	진입 광장	인공폭포	
신설	산책로	-	5	1.5	194	291	시설간연결로	진입 광장	인공폭포	

6. 편입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지적	편입			
1	세간리	63	답	1,554	1,554	의령군		전체
2	세간리	64	답	900	865	의령군		부분
3	세간리	806-1	답	1,498	1,423	의령군		부분
4	세간리	806-2	전	3,708	3,708	의령군		전체
5	세간리	809-7	답	1,263	1,263	의령군		전체
6	세간리	809-6	답	869	869	의령군		전체
7	세간리	809-5	답	628	628	의령군		전체
8	세간리	810	답	1,607	1,607	의령군		전체
9	세간리	809-3	답	1,402	1,402	의령군		전체
10	세간리	809-2	답	1,226	1,226	의령군		전체
11	세간리	811-2	전	704	704	의령군		전체
12	세간리	809-4	답	1,233	1,233	이가영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01-6	전체
13	세간리	62	답	1,501	1,501	이상순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795	전체
14	세간리	811-1	전	1,107	1,107	이평호	부산시 수영구 장안동 1069-3 광안동일스위트 101-140	전체
15	세간리	809-1	답	380	380	이종기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4	전체
계				19,580	19,470			

의령군공고 제2011-763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 목수 (본)		
계	3,834		2.0	4		
가례면	가례리 전역	299	일령읍 리	1.0	1	
용덕면	가락리 전역	222	용덕면 리	0.5	1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훠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왕요리 전역	232				
	가미리 전역	299				
낙서면	절곡리 전역	557	낙서면 내제리	0.5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의리 전역	304				
	내제리 전역	385				
	전화리 전역	568				
	아근리 전역	258				
	율산리 전역	273				
부림면	대곡리 전역	43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의령군수

직인

의령군 공고 제2011-765호

2012년도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21.

의령군수

2012년도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 신청대상

-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로서
의령군에 근거를 둔 단체

□ 사업시행기간 : 2012. 1 ~ 12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1. 12. 21 ~ 2011. 12. 30까지(근무시간내)
- 접수처 : 의령군 사회단체관련부서(실과·직속기관·사업소)
- 신청방법 : 직접(서면)
- 신청서류 :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당부서 비치)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및 정관사본

□ 보조사업의 심사 및 지원절차

- 위원회 심의시기 : 2012. 1월(예정)
- 보조금의 지원 :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 정산보고 :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문의

- 의령군청 기획감사실(전화055-570-2112) 및 당해사업 담당 실과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검사점검지연·등록)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2. 공고대상

시행일	차량번호	납세자명	납세자주소	금액	반송사유	비고
2011.12.21	경남81머3575	김광수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120,000	수취인불명	처분사전통지
2011.12.21	경남80구7933	김덕윤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00,000	이사감	처분사전통지
2011.12.21	96우9986	노기환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0,000	이사감	처분사전통지
2011.12.21	06소6146	문경순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000	이사감	처분사전통지
2011.12.21	경남30고3481	이용만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8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통지
2011.12.21	96무2631	(주)명남환경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0,000	이사감	처분사전통지
2011.12.21	경남30고1990	채창석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0,000	이사감	처분사전통지
2011.12.21	경남81머1134	최종열	의령군 양산시 중부동	300,000	수취인불명	처분사전통지
2011.12.21	28라4266	NAZAROV FAHRIDIN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90,000	수취인불명	처분사전통지
2011.12.05	02너5709	김가일(김종길)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20,000	폐문부재	과태료부과
2011.12.05	21마4738	김현자	경북 구미시 인의동	140,000	폐문부재	과태료부과
2011.12.05	경남42나4092	박갑희	의령군 칠곡면 도산리	20,000	수취인불명	과태료부과
2011.11.29	01두9270	강신성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경남81나8383	강주호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경남41가1895	고려정관(주)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경남46가7267	고려정관(주)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90저9481	김시정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96머1753	김정용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96무2754	김효열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1길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97마1903	노한석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97너6955	대보전력(주)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경남81가2540	박원석	의령군 의령읍 중리로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86도6984	백귀년	의령군 의령읍 하리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21구9882	이병한	의령군 화정면 벽화로	21,24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21무6700	이상원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318,600	수취인불명	압류예고
2011.11.29	67고3135	이창기(이수봉)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10거2531	정두영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2길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65버1762	정석이(제해현)	의령군 의령읍 중리	84,96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96거9145	(주)부림종합건설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18,600	폐문부재	압류예고
2011.11.29	84거1521	(주)선진산업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73부1188	(주)엠비테크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83보3086	(주)한화케미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1.29	경남33마3272	차나카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318,600	이사감	압류예고
2011.12.12	01두9970	강신이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1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96무2377	고려정관(주)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96부7359	김문규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62러2264	김상규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2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79고6263	김유열	의령군 부림면 한지22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21버5565	남택신	의령군 가례면 운암로1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84거9063	문명간	의령군 부림면 한지36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96무2296	박동철	의령군 지정면 보덕로1길	325,800	수취인부재	압류통지
2011.12.12	03루7611	윤영주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5길	325,800	폐문부재	압류통지
2011.12.12	65버1582	의료법인 선진의료재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경남41가4468	이수봉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8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65리2468	이옥연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325,800	폐문부재	압류통지
2011.12.12	97러1146	전동배	의령군 정곡면 성황로3길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96무2743	(주)명남환경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경남35다7568	(주)일신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96무2814	(주)케피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25,800	이사감	압류통지
2011.12.12	09나2272	허기환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325,800	수취인불명	압류통지
2011.12.12	65버1494	허복선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7길	325,800	수취인불명	압류통지

3. 공고기간 : 2011.12.22 ~ 2012.1.5(15일)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2호 및 제84조 제2항제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5. 문의 : 의령군 민원봉사실 ☎ 570-2155, FAX) 570-2041

▶ 대상차량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지연시 가산금부과(최고 77%)-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 씩(60개월간)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12. 21

의령군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의령군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신고수리일	다음신고일
(주)거고건설 (김도희)	석공사업 (의령2008-04-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08-09-0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6-1	2011.12.22	2014.12.22 ~ 2015.01.21
계림토건(주) (안지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02-10-06)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52-3	2011.12.22	2014.12.22 ~ 2015.01.21
우진토건(주) (문영남)	토공사업 (의령2002-02-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02-10-05)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488-5	2011.12.22	2014.12.22 ~ 2015.01.21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상반기)융자지원 계획 공고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관내 농업 경영체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의 령 군 수

1. 사업명 :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2. 융자규모 : 7,000,000천원

3.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로서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다만, 연체자 및 연체자의 보증인, 신용관리대상자 정보등록자는 제외

4.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쌀, 양파, 밤, 한우 등의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 2012년 12말까지 완료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5. 지원조건

- 금리(이자) : 연리1%
 - 상환기간 경과 시 농림사업자금 연체이자율(연리14%) 적용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생산자단체 등의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은 1년 이내 무이자 읍자

6. 지원한도 (총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 중복읍자 :
 - 농업 경영체에 대하여 자금별(시설·운영) 읍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자금 : 농가당 5천만원 (생산자단체·농업법인 3억원)이내
- 운영자금 : 농가당 3천만원 (생산자단체·농업법인 1억원)이내
- 생산자단체등의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은 운용 가능금액의 70%이내

7. 읍자신청서류 접수

- 신청 기간 : 2012. 01. 01 ~ 2012. 01. 31까지(31일간)
- 신청 장소 : 신청인(농업경영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서류 : 읍·면에서 근무 시간 내(읍자대상자 선정신청서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농정과(☎570-2601)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http://wwwuiryeong.go.kr>(의령군 홈페이지)

의령군 공고 제 2011-773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의 령 군 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태영종건(주) (정영웅)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의령2011-11-03)	2011.12.23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12. 30. ~ 2012. 01. 13.(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구분	농지소유자		대상농지	지목	면적(m ²)
	주소	설명			
의령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4길 28(오동동)	김현숙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 167	전	255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 169-1	전	107

4. 청문 개최 및 의견제출

- 청문개최일시 : 2012. 01. 31.(화) 14:00~
- 청문장소 : 의령군청 4층 상설 감사장
- 의견제출 : 2012. 01. 26.(목)까지
- 문의처 : 의령군 농정과 농정담당
(전화:055-570-2604 / fax: 055-570-2048)

5.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령군청 농정과 농정담당(055-570-2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의령군수

의령군 공고 제2011 - 78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3.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4. 취소일자 : 2011년 12월 29일
5.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성명	상호	영업장 소재지	처분원인
김홍노	벽계식당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664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유학식	지곡상회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709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김미란	자연참숯굴한운전문점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330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방명희	화이트피아세탁편의점	의령읍 중동리 396-7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강미란	의령터미널매점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53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6. 소매인지정 신청

가. 공고기간 : 2011. 12. 30. ~ 2012. 01. 09.

나. 접수기간 : 2011. 12. 30. ~ 2012. 01. 09.

다. 신청장소 : 의령군청 경제과(☎ 570-2824)

라. 구비서류

-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군청 경제과 비치), 신분증 및 도장
-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1부
 -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마. 참고사항

- ①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②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정 할 수 없음)

2011. 12. 30.

의령군수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번호	소유자명	차명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경남41가1895	(주)고려정관	크레도스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009-01-13~2011-01-12
96거9145	(주)부림종합건설	라이노5톤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010-10-16~2011-04-15
84거1521	(주)선진산업	봉고Ⅲ 3방呸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010-04-03~2011-04-02
경남41가6019	(주)성화	엘란트라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2007-10-27~2009-10-26
경남41가7012	(주)지리산빔부	NEW 그랜저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2007-09-23~2009-09-22
72어5482	강한철	이스타나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08-05-01~2010-04-30
65버1679	권복현	크레도스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008-02-29~2010-02-28
경남81머3447	김동욱	와이드봉고킹캡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009-06-21~2010-06-20
경남41가4225	김문준	매그너스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08-06-24~2010-06-23
01두9846	김선희	갤로퍼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007-09-22~2009-09-21
90저9481	김시정	이스타나-츠6밴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2010-03-04~2011-03-03
경남41가2718	김영기	크레도스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07-09-24~2009-09-23
96머1753	김정용	와이드봉고더블캡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2010-03-27~2011-03-26
96무2754	김효열	현대5톤초장축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010-08-06~2011-02-05
10러2667	대왕칠강공업(주)	싼타페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008-03-26~2010-03-25
84가3660	박성룡	이스타나-롱6밴	의령군 의령읍 하리 3	2009-06-27~2010-06-26
05수2795	박충섭	액티언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2006-03-29~2010-03-28
65라7739	박우태	엘란트라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2007-12-22~2009-12-21
86도6984	백귀년	와이드봉고킹캡	의령군 의령읍 하리 3	2010-03-08~2011-03-07
97너7051	백종출	그랜드스타렉스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	2009-02-25~2010-02-24
42무2589	서쌍갑	스포티지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005-07-15~2009-07-14
96무2688	이명숙	포터 II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009-01-31~2010-01-30
67고3135	이창기(이수봉)	NEW EF쏘나타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009-03-07~2011-03-06
경남30더5839	전외두	티코(TICO)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2007-11-28~2009-11-27
10거2531	정두영	카니발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09-03-14~2011-03-13
96무2193	정원복	봉고프런티어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2009-03-21~2010-03-20
경남35다1780	주식회사 일신	그랜저XG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007-11-23~2009-11-22
경남7노2652	태림건설(주)	라이노 5.5톤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2009-05-12~2009-11-11
06버4522	하중기	쏘나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2006-06-14~2010-06-13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및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

3. 공고기간 : 2011.12.30 ~ 2012.14(15일)

4. 문의 : 의령군 민원봉사실 ☎570-2155, FAX)570-204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 및 검사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며, 만일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동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1. 12. 30

의령군수

남산동 도시계획도로(의령도서관~창홍빌라) 개설 사업 공고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남산동 도시계획도로(의령도서관~창홍빌라)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1. 12. 31.

의 령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산동 도시계획도로(의령도서관~창홍빌라) 개설 사업
2. 사업자 : 의령군수
3. 위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4.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75m, B=8m
5. 공고기간 : 2011. 12. 31 ~ 2012. 01. 13.

※ 반드시 공고일의 익일부터 14일 이상 게시공고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의령군청 건설도시과
【☎055- 570-2730】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불임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현주소)	성 명	주 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1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81-2	답	156	156	송현호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472-2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현주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81-2	영 농 보상비		156	송현호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472-2			